

특약변경보고서

1. 약관명 : 『함께하는 사랑 적금』 특약
2. 변경 시행일 : 2019년 2월 28일
3. 기 가입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 내용 : 후원금 출연기간 연장

『함께하는 사랑 적금』 특약		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『함께하는 사랑 적금』 특약</p> <p>제 1 조 ~ 제 8 조 (생략)</p> <p>제9조 기타</p> <p>① 고객이 은행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를 지정하여 등록하고(등록 후 협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), 2회 이상 적립한 경우 은행은 2018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계좌들의 연 평균 잔액의 0.1%를 자체 출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(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)에 후원금을 제공합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『함께하는 사랑 적금』 특약</p> <p>제 1 조 ~ 제 8 조 (좌동)</p> <p>제9조 기타</p> <p>① 고객이 은행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를 지정하여 등록하고(등록 후 협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), 2회 이상 적립한 경우 은행은 2019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계좌들의 연 평균 잔액의 0.1%를 자체 출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(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)에 후원금을 제공합니다.</p> <p>② (좌동)</p>	<p>후원금 출연 기간 연장</p>